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5,571,740	12,167,152
일반회계	367,674,146	11,030,224
특별회계	37,897,594	1,136,928
기타특별회계	37,897,594	1,136,9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326,160	969,785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248,549	7,45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61,469	16,844
의료보호비특별회계	1,306,199	39,186
복지기금특별회계	622,168	18,665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79,058	2,372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753,867	82,616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24	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87,57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969,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호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